

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

1. 취지

제21회 우수조례선정은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·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선정대상

1) 개인상

-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·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
-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 함

2) 단체상

- 광역 및 기초의회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
- 광역 및 기초 집행기관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
- 의회 및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자치단체 당 1건으로 제한
(※ 단,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집행부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음)

3) 공무원

- 우수조례 제(개)정에 기여한 공무원(집행부 및 의회 포함)

4) 심사 대상 기간

2024. 01. 01. ~ 2024. 12. 31까지 제(개)정되고 본회의에 통과 된 조례

3. (응모)신청기간

2024년 12월 02일(월)부터 2025년 01월 07일(화)까지

※ 단, 과거 접수했던 조례 지원은 불가함

4. 신청서류 (각 2부)

- (1) 신청서(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)
- (2) 조례 제·개정 경과 자료
 - 발의에서 심사, 공포까지의 모든 자료(회의록, 공포내용 등)
 -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(현장 답사 등, 활동자료)
 - 조례안 제(개)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, 공청회 등의 자료
 -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성과와 평가자료 등
- (3)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
 - ※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
5. 접수비

- (1) 개인상: 150,000원
- (2) 단체상: 300,000원
- (3) 우수조례 제(개)정에 기여한 공무원 : 무료
 - ※ 접수비 납부: 한국씨티은행 102-53166-252 (예금주: 한국지방자치학회)
 - ※ 입금자명 / 단체명 필히 기재

6. 신청방법 및 접수처

-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, 단체상은 해당회회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 함
- 우수조례 제(개)정에 기여 공무원은 해당 의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추천
 - ※ 접수처 : (03736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, 1701호 (충정로2가, 골든타워빌딩)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앞
 - Tel: 02) 567-3372 E-mail: kalgs@kalgs.or.kr
 - ※ 담당자(소속/이름/연락처) 반드시 기재 또는 명함 함께 동봉하여 제출

7. 시 상

- 정기총회와 별도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거행하는 시상식에서 시상
- 선정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 수여

2024. 11.

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 원 득
(사)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배 귀 희

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제도의 참고사항

1. 우수조례 선정·심사 방식

1)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

- 우수조례 선정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

2) 우수조례 선정심사 절차를 예비심사 및 본심사로 이원화

-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

3) 심사기준 및 절차의 엄정성 강화

- 학회 규정에서 명시한 심사기준인 조례의 창의성, 합법성, 효과성, 대응성, 구체성 등에 대해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합의되고 계량화된 심사기준표 및 최종 점수 산정방법을 설정하며, 이에 의거하여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본 심사를 진행

2. 시상식을 수상자/기관 및 학회의 공동 참여 축제화

- 우수조례 시상식은 자치단체장, 지방의원, 관련 공무원 및 학회 회원이 대거 공동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축제로 운영하고자 함
- 시상식을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위상 및 역할을 널리 알리고 수상자 및 수상기관과 학회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

1) 시상 시기 및 장소

- 매년 2월 중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 총회 시 별도의 행사로 시상식 진행

2)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주요 기관장 및 핵심인사 초청

3) 시상 행사(필요에 따라 변동가능)

- 우수조례상 제정취지 설명
- 지금까지의 수상실적 및 나타난 성과 설명(영상물 포함)
- 주요 기관장 축사

- 수상기관 및 수상자 발표
- 시상 및 수상 소감 발표 및 사진 촬영
- 대상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발표(동영상을 곁할 수 있음)

3. 기타 사항

1) 시상 일부 제외 가능

- 응모된 조례 중 수상에 적합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부문별로 시상하지않을 수 있음

2) 유의사항

- 우수조례 응모가 가능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제정되고 본회의 통과 된것으로 함
- 과거 접수했던 조례 지원은 불가함.

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 원 득
(사)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배 귀 희